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45호 2020. 11. 1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306호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2
- 삼척시 조례 제1307호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삼척시 조례 제1308호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6
- 삼척시 조례 제1309호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9
- 삼척시 조례 제1310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 -- 13
- 삼척시 조례 제1311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610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19
- 삼척시 규칙 제611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0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8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2
- 삼척시 고시 제185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2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22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10.26.)에서 의결된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조례 제1306호(의원 발의)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

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10.26.)에서 의결된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조례 제1307호(의원 발의)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4, 제4조5, 제10조2 및 제10조3을 각각 제4조의4, 제4조의5,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요청”을 “외부강의 등의 요청”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10.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김양호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조례 제1308호(의원 발의)

삼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 및 관리지침 기준을 충족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
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삼척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2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10.26.)에서 의결된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조례 제1309호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삼척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연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입금
-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 1. 결산상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일반경상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영)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위원회의 개최, 안건배부, 실비보상, 임기 등에 관하여는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통합기금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
- 2. 통합기금출납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22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10.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김양호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조례 제1310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된 기금은 해당 예금의 예치 기간 만료 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22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10.26.)에서 의결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조례 제1311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을 ““법””으로, “표준 적용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지급일”을 “법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일”로, “사람으로”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에서 제외한다.

1.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르게 하는 경우

2.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지급을 받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을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명예수당의”를 “수당의”로, “참전명예수당을”을 “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망일로”를 “사망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10.06.)에서 의결된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김양호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규칙 제610호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10.06.)에서 의결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20년 11월 13일

삼척시 규칙 제611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을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를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로,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를 “주민등록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접수”를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로,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송부”를 “수당 지급신청서를 송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으로,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 받고자”를 “지급받고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유족또는”을 “유족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있”을 “수 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증의 기본증명”을 “기본증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의 중단)”을 “(수당지급의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수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 환수)”를 “(수당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0 - 18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658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459-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658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 호(동안)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7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15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5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25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23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7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2길 36-22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궁촌길분기)
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356-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4길 604	20201113	가설건축물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사용 (옥원이천로 분기)
9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증봉리 133-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증봉당골길 271	2020111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10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5-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안길 626	2020111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활용
1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19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서길 61-11	2020111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방위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구분	주소	구분					
		총계		11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포면 내미포리 459-5		강원도 삼척시 미포면 동안로 658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 이승휴의호(동인)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7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15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5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1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25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474-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723-23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47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2길 36-22		20201113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공촌길분기)	
부여	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356-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4길 604		20201113	가설건축물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 사용(옥원이천로 분기)	
부여	9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133-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271		2020111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부여	10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미읍리 5-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미읍안길 626		2020111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주 활용	
부여	1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진리 19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진서길 61-11		2020111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 방위 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0 - 1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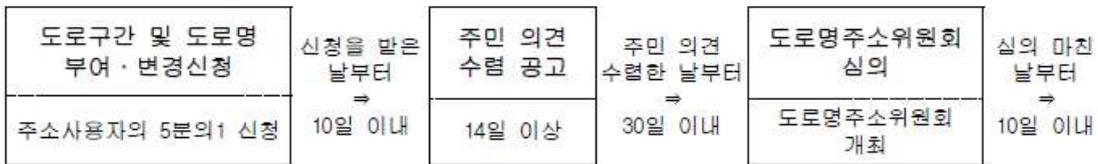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3.

삼척시장

- 고시일 : 2020. 11. 13.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변경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 절차



<변경의 경우>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계(☎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변경 전 (기준)	하마음안길	길	노곡면	하마음리 341-9	하마음리 산1	2537	5	1 → 520	도로구간 종점연장
	변경 후	하마음안길	길	노곡면	하마음리 341-9	하마음리 3-1	3212	5	1 → 644	



위 치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